

#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3121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2. 11. 17.  
제출자 김포시장

## 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2022년 11월 17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## 2. 제안이유

- 「혈액관리법」 제4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3에 따라 김포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관내 소재 혈액관리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연 3회에 한하여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류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지급 및 구체적 포상 기준안 추가 등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 헌혈 정신 고취.
- 헌혈 권장활동을 통하여 신종 감염병 발생 및 확산으로 감소된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, 혈액 수급의 안정화로 혈액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시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대상, 소요경비에 대한 지원기준 추가 및 신설 (안 제8조제3항)
  - 대상추가(단체 → 개인이나 단체)
  - 소요경비 신설(없음 → 1인당 최대 3만원)
- 나. 포상 기준안 추가 (안 제8조제4항)
  -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→ 관내 소재 혈액 관리 기관에서 연간 5회 이상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으로 기준 추가

## 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「혈액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헌혈자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,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헌혈 참여를 권장해 지역사회 헌혈 활성화 및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됨.